"서울문화재단은 문화예술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키우고자 서울시에서 설립한 기관입니다"

| | |
|---|---|
| 문서번호 | 서울연극센터-437 |
| 보존기간 | 준영구 |
| 결재일자 | 2016.05.13. |
| 공개여부 | 공개 |

| ★팀원 | 매니저 | 창작지원본부장 |
|---|---|---|
| | | |
| 협 조 | | |
| 대리<br>대리 | | |

# 2016년 서울연극센터 유망예술지원 NEWStage 지원금 집행 및 관리 계획

서울문화재단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 2016년 서울연극센터 유망예술지원 NEWStage
# 지원금 집행 및 관리 계획

연극 분야의 새롭고 다양한 창작활성화를 위하여 잠재력 있는 예술가를 발굴하여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유망예술지원 NEWStage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합리적인 지원금 집행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 Ⅰ 추진근거

○ 대표이사 방침 제489호(2015.12.28.) “2016년도 유망예술지원사업 기본운영계획”
○ 대표이사 방침 제47호(2016.01.25.) “2016년도 유망예술지원사업 세부추진계획”
○ 대표이사 방침 제167호(2016.03.24.) “2016년도 유망예술지원사업 심사 결과보고”
○ 서울연극센터-366(2016.04.20.) “2016년 서울연극센터 유망예술지원 NEWStage 운영계획”

## Ⅱ 심사결과

### ▢ 신청접수

| 접수기간 | 심사 | | | 최종발표 |
|---|---|---|---|---|
| | 1차 행정심의 | 2차 서류심사 | 3차 인터뷰심사 | |
| 2015.12.28.(월)~ 2016.01.19.(화) | 2016.02.01.(월)~ 2016.02.02.(화) | 2016.02.03.(수)~ 2016.02.23.(화) | 2016.02.29.(월) | 2016.03.24.(목) |
| 24명 지원신청 | 지원신청자격 미달 1명 | 인터뷰 심사 대상자 8명 선정 | 최종 선정자 및 지원금액 결정 | 총 4명 선정 |

### ▢ 지원선정 결과

| 선정자(가나다 순) | 지원사업 명 | 지원금액(천원) |
|---|---|---|
| 김정 | 손님들 | 18,000 |
| 신명민 | 우리별 | 18,000 |
| 이연주 | 전화벨이 울린다 | 19,000 |
| 이은서 | 아임 언 아티스트 | 18,000 |
| 합 계 | | 73,000 |

## Ⅲ 지원금 운영관리 주요 절차

| 집행단계 | 일 정 | 상세 절차 | 비 고 |
|---|---|---|---|
| 지원사업 변경신청 | 교부신청 이전 | - 사업개시 30일 전까지 재단에 유선통보 후 이메일 송부(스캔파일)<br>※ 변경내용에 대한 재단의 승인 이후 교부신청이 가능함 | |
| 지원금 관리통장 및 전용카드 발급 | 교부신청 이전 | - 교부신청서 제출 전 지원금 관리통장(우리은행)과 전용카드 신청 및 발급 | |
| 교부신청 | 사업시작 최대 90일~30일 이전까지 | - 사업개시 최대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교부신청서 제출<br>※ 교부신청 이후 사업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 | 국가문화예술 지원시스템 활용 |
| 지원금 교부 | 교부신청서 접수 후 14일 이내 | - 필수제출서류가 모두 구비된 교부신청서를 검토 후 14일 이내 지원금 지급<br>※사업규모 및 내용변경에 따라 지원금 삭감 및 취소될 수 있음 | |
| 사업수행 (지원금 집행·관리) | 2017년 1월 중 | - 지원금 수령 후 해당사업 진행<br>- 지원금 집행내역은 10일 이내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 입력 | 재단후원 명기 |
| 현장평가 | 사업기간 중 | - 현장평가 실시 | |
| 지원사업 정산 및 성과보고 제출 |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 | -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정산 및 성과보고서 제출<br>※ 지원금 미 정산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함 | 사진, 기록, 홍보물, 영수증, 보도자료 등 |
| 종합평가 | 정산보고서 접수 후 | - 각 단체의 신청, 교부신청, 성과보고내역 비교·검토하여 행정평가<br>- 현장평가(해당 단체에 한함)와 행정평가를 통한 종합평가실시 | 미흡한 정산보고자료 추가 제출 |

## Ⅳ 지원금 집행 및 관리 세부절차

▢ 지급 대상 : 총 4명

▢ 총 지원금 : 73,000천원

▢ 지원금 집행 및 관리지침 수립

○ 서울문화재단 지원금 집행지침의 지원금 집행 및 관리절차를 준용하되, 해당 사업의 성격을 반영하여 세부 지침에 대해 일부 변용한 ‘지원금 집행 및 관리지침’을 수립하여 운영

## ▢ 단계별 집행 절차

### ① 교부신청 및 지원금 지급

○ 교부신청 : 사업시작일 기준 최대 90일~30일 전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이용해 접수

○ 지원금 지급 : 교부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100% 일시 지급

< 지원사업 및 지원금 관리 절차 >

**변경신청서 제출** ⇒ **지원금 교부신청** ⇒ **지원금 지급의 적정성 검토** ⇒

- 이메일 제출
- 사업시작 90~30일 전

**지원금 지급** ⇒ **사업시행** ⇒ **현장평가** ⇒

- 현장평가위원 방문, 사업평가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종 합 평 가**

-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
- 행정평가(정산보고서) + 현장평가

※ 평가 관련 세부계획은 추후 별도 수립 예정

### ② 지원금 집행 기준

○ 지원사업은 선정자가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금액에 상관없이 지원금 집행 영수증을 첨부하여 성과를 제출해야 함

○ 선정된 사업의 '직접경비'에만 지출해야 하며, 지급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지원금은 재단의 '문예지원사업 지원금 관리규정' 및 '유망예술지원 지원금 집행요령', 서울특별시의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 등 기타 국가 보조금 관리와 관련된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처리함

○ 선정사업은 해당 기간 안에 완료해야 하며 지원금 역시 해당 기간 안에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지원신청 당시 사업계획'과 '지원금 청구 시 사업계획'을 비교 검토하여 사업내용이 당초 계획보다 크게 변경되거나 현저하게 부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금 규모 재조정 가능

< 지원사업 변경 관련 조치 기준 >

| 변경 내역 | | 변경 기준 | 조치 사항 | 비 고 |
|---|---|---|---|---|
| 사업 주체 | 주최자 | 사업의 주체 변경 | 지원금 취소 (익년도 지원신청배제) | ※ 실질적 주체의 변경이 아닌 공동주최의 경우는 예외로 함 |
| 사업 규모 | 사업비 | 지원신청 당시 사업비의 40% 초과 축소 | 지원금 취소 (익년도 지원신청배제) | ※ 지원신청 시 자부담액의 60% 이상 유지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 | 사업일수 또는 행사횟수 | 지원신청 당시 사업일수(횟수) 50% 초과 축소 | 지원금 삭감 | ※ 실제 공연횟수/전시일수로서 사업 준비기간은 미포함 |

| 변경 내역 | | 변경 기준 | 조치 사항 | 비 고 |
|---|---|---|---|---|
| 사업 내용 | 주요 참여자 | 주요 출연진·제작진·기획자 ·참여작가 50% 초과 변경 및 축소 | 지원금 취소 (익년도 지원신청배제) 또는 삭감 | 연극, 무용, 전통, 음악, 시각, 다원 |
| | 사업내용 | 기획의도(주제), 전시내용 변경 | 지원금 취소 (익년도 지원신청배제) | 시각, 다원 |
| | 프로그램 | 개별 프로그램 50% 초과 변경 | 지원금 삭감 | 무용, 음악, 전통, 다원 |
| 사업 수행 | 사업수행 | 지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업포기 | 지원금 취소 (익년도 지원신청배제) | - |

## ③ 후원 표시 : 서울시, 서울문화재단

## ④ 지원금 정산

○ 보고방법 : 지원금 정산보고서에 의거하여 추진사업 내용에 대한 결과보고 및 해당 정산 증빙자료 제출

○ 정산범위 : 지원금 전액

○ 정산기한 :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

○ 정산 내역에 대한 지출 증빙

- 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 이체거래확인서(혹은 이체확인증) 등 인정
- 출연료, 사례비 등 개인에 대한 지급 내용의 경우 사례비지급내역서, 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
- 사업 진행 및 홍보과정에서 제작된 사업실적 관련 자료 제출

## ⑤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의 의무

○ 지원금 정산 시 해당 지원금의 집행잔액 및 예금결산이자 반납

- 미집행액 및 집행잔액, 결산이자는 구분하여 선정자명을 표기하여 지정된 계좌로 입금

| 반환 계좌번호 | 예금주 |
|---|---|
| 우리은행 1005-101-969790 | (재)서울문화재단 |

## ⑥ 환수 조치

○ 미정산 혹은 교부신청서 상의 예산집행계획과 실제 사용 금액이 상이한 경우 환수조치

- 정산보고서 제출 시 담당자 검토 후 필요시 환수조치 통보
- 지원금 반환 조치를 통지받은 선정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원금을 지정하는 계좌로 반납

## V 향후 일정

▢ 지원금 교부 : 2016년 10월 ~ 12월 중
▢ 사업추진(본공연) : 2017년 1월 중
▢ 현장평가 :  2017년 1월 중
▢ 지원금 정산 : 2017년 2월 중
▢ 정산확정 및 종합평가 : 2017년 2월~3월 중
▢ 사업결과보고 : 2017년 3월

붙임 1. 지원변경신청서 1부.
2. 지원금 집행요령 1부.

관련 1. 대표이사 방침 제489호(2015.12.28.) “2016년도 유망예술지원사업 기본운영계획”
2. 대표이사 방침 제47호(2016.01.25.) “2016년도 유망예술지원사업 세부추진계획”
3. 대표이사 방침 제167호(2016.03.24.) “2016년도 유망예술지원사업 심사 결과보고”
4. 서울연극센터-366(2016.04.20.) “2016년 서울연극센터 유망예술지원 NEWStage 운영계획”

. 끝.